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‘수익사업 승인서’와 ‘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’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,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6항 중 “별지 제13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13호서식”으로, “승인 유효기간 연장서”를 “승인서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별표 2”를 “별표 4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, 별지 제12호의2서식,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3호의3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단체명		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신청내용	종전 수익사업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		
			발급일자	발급번호	
		사업장 소재지			
	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	변경 내용			
		변경 사유			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 변경계획서(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-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-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-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-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-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-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(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기안·결재	➔	승인 통보
신청인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

수익사업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제출일	접수일
신고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
변경사항	①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②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 ③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 ④ []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(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변경내용	변경예정일	
	변경 내용	
	변경 사유	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 신고서 제출 신고인	→ 접수 국가보훈부

제 호

수익사업 승인서

1. 단 체 명:
2. 대 표 자:
3. 주 소:
4. 승인내용:
5. 수익계약대상단체 여부:
6. 유효기간: . . . ~ . . .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·
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·제11조의2제6항에 따라
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전화번호	
	소재지		
신청내용	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
		발급일자	발급번호
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	사업장 소재지	
	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	
		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	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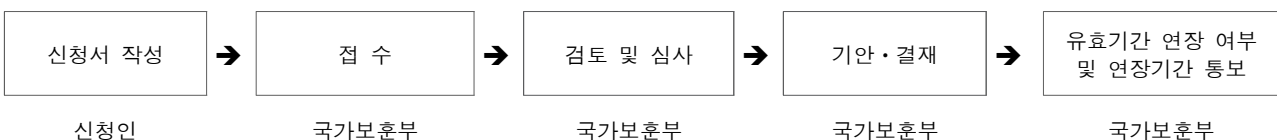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그 밖에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 연장) ① ~ ⑤ (생 략)	제11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 연장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하고,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<u>별지 제13호의3서식</u> 의 수익사업 <u>승인 유효기간 연</u> <u>장서</u> 를 발급해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13호서식</u> ----- ----- <u>승인서</u> ----- -----.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규제의 재검토) 국가보훈 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 경신고사항,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, 제17조의4제1항 및 <u>별표 2</u> 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 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	제19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4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-----.